

# 예산총칙

2017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43,097,572	10,292,927
일반회계	309,474,372	9,284,231
특별회계	33,623,200	1,008,696
기타특별회계	33,623,200	1,008,696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877,950	26,339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797,826	23,935
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	390,837	11,725
주차장특별회계	287,565	8,627
수질개선특별회계	30,766,022	922,981
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	503,000	15,090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서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 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,342,716천원으로 한다 .

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상환 한도액은 11,2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